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2000. 2. 19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1월 18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1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2. 1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승 기)

가. 제안이유

- 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관직명칭 변경
- 「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」 건립으로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에 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을 추가하여 현행조례 미비점 보완

나. 주요골자

-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관직명칭 변경(안 제7조제3항, 제10조제3항)

- 업무소관 변경 : 기획조정실장 ⇒ 자치행정국장
- 관직명칭 변경 : 정보화담당관 ⇒ 정보통신과장
- 지역정보화본부 기능 보완(안 제11조제6호)
 - 6. 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(신설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: 김 종 만)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 직제개편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의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,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도 직제개편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소관이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고, 관직명칭이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,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의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였으며

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조례 제11조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에 “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”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 제3항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중 “정보화담당관”을 “정보통신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6.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관 계 법 령

【정보화촉진기본법】

○ 제8조(정보화추진위원회)

-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은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.
-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

○ 제11조(공공정보화등의 추진)

-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이에 상응하는 행정, 재정, 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